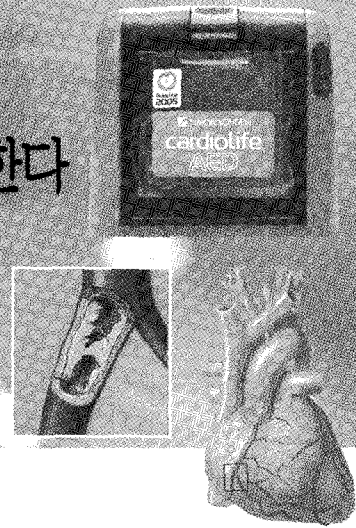


# AED장착 자판기, 국내 도입해야 한다



자판기가 단순히 판매장비로만 역할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 자판기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일' 들을 하는데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가 있다. 하고자 한다면 좋은 일에 쓰는 모금을 한다거나 유괴방지 및 범죄예방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 구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판기에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일명 「심실 제세동기」라고도 함. 이하 AED)를 부착하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발생한 환자를 구해 낼 수 있다. 자판기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산업의 미래를 걸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창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늘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본의 사례를 남의 나라 얘기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도 최근 각 공공장소에 AED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가 법제화가 된지라 AED설치가 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자판기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이다. AED설치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이 자판기에 장착하면 공간 활용에 있어 제격이다. 게다가 자판기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효과가 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내도 이제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일본이 AED 장착 자판기를 늘리는 이면에는 산업계의 고도의 실익 계산도 깔려 있다. 국내도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 및 시장 과제를 집중 분석해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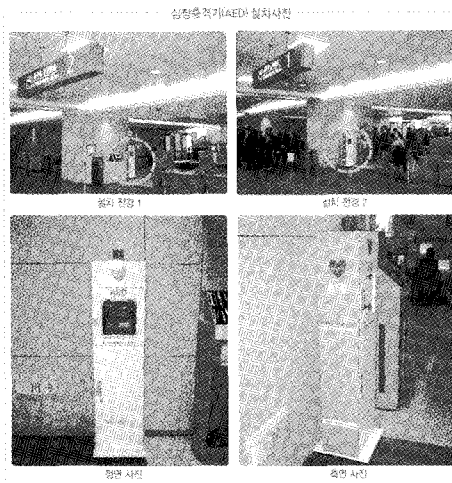
## 인천공항, AED 설치

최근 인천공항이 공항 내 공항 이용객이 빈번한 장소에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설치·운영 개시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인명 구조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인천공항이 AED를 설치하게 된 것은 2007년 11월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08년

6월부터 공항, 항공기, 열차,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내·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서는 누구나 식별이 가능한 곳에 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함으로써 만일의 응급의료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공항에서는 오래 전부터 AED를 직선거리 100~200m 간격으로 1분~2분 이내 도달가능 거리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안전단에서는 충분한 사전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용객이 붐비는 지역을 위주로 2008.2.12(1차)까지 15개소에 2008.5.31(2차)까지 18개소에 총3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기존 휴대용 5대 포함 총38대 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어 공공장소에 AED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AED 사용방법 및 장점

그렇다면 이런 AED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심장마비의 경우 대개 구조 호흡이나 심폐소생술로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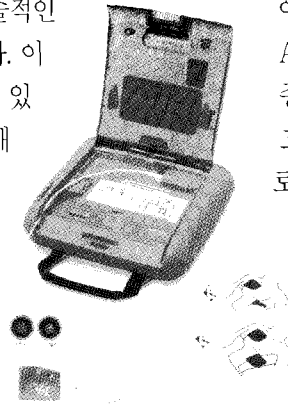
### 자동제세동기(AED)는 왜 필요한가?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40%에 달하는 미국과 15% 이상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4.6% 정도에 그쳐,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만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응급조치가 필수적이지만 119 신고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07년 기준 평균 4분 27초, 실제 5~10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119 신고 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심폐소생술과 함께 제세동을 행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AED가 설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AED를 이용하여 주변 사람이 얼마나 신속하게 전기 충격을 시행해 주는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AED를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인명 구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6월 15일부터 "

능하지만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서 세동을 동반할 수 있고 그 경우 일정한 전기 충격이 도움이 된다. 이때 사용하는 게 제세동기(defibrillator)라는 기계이다. 의학 드라마에서 'XX줄 차지, 클리어' 하면서 가슴팍에 가져다대면 몸이 덜덜하는 그 기계가 바로 그 기계이다. 실제 사례로 심장세동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생존확률이 늘어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일본의 사례로 심장세동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분마다 10%씩 구명율이 떨어진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고교 야구선수가 갑작스레 심장에 통증을 호소, 자동 제세동기(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를 이용해 쇼크를 준 뒤 심폐소생술을 거쳐 응급요원에게 신속히 넘겨준 결과 1주일정도의 입원만으로 회복을 한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제세동기는 무척 사용이 편리하게 설계되어있어 상자에서 꺼내 음성 메시지에 따라 상체의 옷을 벗기고 충격패드의 그림에 따라 몸에 밀착시킨 뒤 '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몸에서 손을 떼고 불이 들어오는 버튼을 누르면 충격이 완료된다.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심박을 모니터하

여 충격이 필요할지 등의 기술적인 판단은 기계가 알아서 해 준다. 이렇게 요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AED의 장점이다. 비록 개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AED가 있으면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기가여서 최근 도입이 늘고 있다.



### 일본의 보급 사례

일본은 2004년부터 AED 설치를 의무화하여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져 왔다. AED 보급 확대에 있어 자판기도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최근까지 AED 장착 자판기의 보급대수는 약 1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설치 로케이션으로는 다중 이용시설인 건물 로비 및 공장을 들 수 있다. 주로 장착이 되고 있는 AED는 니혼코덴 제품이 주류를 이룬다. 일본의 경우 자판기 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큰 만큼 자판기를 이용한 AED 보급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열기가 높은 게 사실이다. 자판기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자판기 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AED 장착은 자판기의 가치와 명분을 높일 수 있을 절호의 기회이다. 다시 말해 AED 장착은 자판기가 퇴출되지 않고 필수적인 기기로서 자리를 지키게 하는 구세주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신규 로케이션 개척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준다. 관공소, 공공기관 같은 로케이션에 있어 AED 장착 자판기는 설치 명분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자판기 단독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 공공성

이 배가 된다.

AED장착 자판기의 설치가 느는 또 다른 이유는 2기종이 결합을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실리성이다. 공간이 협소한 경우 2기종을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 결합 설치하는 게 공간 활용 효과가 높다.

### 국내 보급 확대 필요성

국내도 지난 2007년 12월 1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AED 설치가 법제화가 되어 시장 확대의 전기를 맞았다. 이 법에서는 2008년 6월 15일 이후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반 시행령의 미비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이런 제반 시행령 개정이 올 연말내로 마련되면 AED 보급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자판기도 적극적인 AED 장착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 된다. AED 설치 확대의 대외적인 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 자판기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AED 장착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보급이 크게 확대될 AED를 자판기로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냐는 산업계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자판기 장착을 통한 공간 활용 효과를 강조하며 AED를 적극 자판기로 끌어 들일 수 있어야 한다.

AED 장착 자판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본의 설치 사례라든가 도입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AED 장착 자판기를 적극 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쨌든 AED 설치 비용부담의 주체는 다중 이용시설 로케이션 주이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AED 장착 자판기는 결코 밀리지 않는 장사이다. 공공성도 강화하고 자판기의 가치를 높이는 일거양득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AED의 자판기 장착 운동의 주체는 산업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 AED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자판기에 AED 장착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계에서 AED 장착 자판기 시스템 개발해서 적극적인 영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판기에 AED를 장착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까? 일본 니혼코덴 제품을 국내 수입 판매하는 니혼코덴코리아에 따르면 장비비용(AED장비, 배터리, 패들)은 약 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니혼코덴코리아는 국내 자판기에 AED를 장착하는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 자판기 업체를 대상

으로 AED 장착 필요성과 활용가치를 적극 강조하며, 도입 확대를 피해 나갈 예정이다.



자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AED 같은 장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 자판기 시장이 한계를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자판기의 영역을 판매장비로만 제한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자판기가 좋을 일도 하며 활용도를 높인다면 고객 선호도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국내 자판기 업체들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AED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14), 2006년 5월 26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7. 2. 6)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채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07.2.22)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

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7.2.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교통사고 사상자는 물론 비만·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 질환자수 증가 등으로 응급의료상황 발생건수가 증가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의 사망비율을 나타내는 예방가능사망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39.6%로 선진국 평균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임. 이에 구급차·철도차량·항공기·선박·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이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즉, 우리의 법령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조차도 파산선고를 자격상실이나 당연 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음.

그러므로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예: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특정한 법인이거나 특정 위원회 등의 임원·위원·이사 또는 금융관련 업무 종사자 등)'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소방구급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47조의2 신설).  
 다. 응급구조사 자격의 결격사유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안 제37조제3호)

### 법률 제 호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 하여금 救助 및 應急處置에 관한 教育을 받게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의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항공법」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1.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업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

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4條(救助 및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應急醫療從事者가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 하여금 救助 및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14條(救助 및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 ① _____ ____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신 설>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의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第37條(缺格事由)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應急救助士가 될 수 없다.	할 수 있다. 第 3 7 條 ( 缺 格 事 由 ) ----- -----
<신설>	7.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1. · 2. (생략) 3.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1. · 2. (현행과 같음) 3. 금지산자·한정치산자
<신설>	8.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생략) <신설>	4.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9. 「항공법」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설>	10. 「철도안전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1. 「선원법」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생략) 第16條(財政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應急醫療機關등에게 필요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第 1 6 條 ( 財 政 支 援 ) ①----- ----- ----- ----- ----- -----		
<신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